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두는 통계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두는 방위사업청 소속 한시정원(5급 1명)을 감축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두는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3. ~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본부·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제11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8호 중 “창업프로그램 및 사업재기”를 “사업재기”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제14조제3항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4조제3항제6호의2, 제8호”로 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6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제4항, 별표 6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19. (생략) <u><신 설></u>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9. (현행과 같음) <u>20. 본부 · 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u>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생략)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u>15. 본부 · 소속기관 및 단체의 시설물 안전관리</u> 16. (생략)	제11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4. (현행과 같음) <u><삭 제></u> 16.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 · 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소상공인 창업프로그램 및 사업재기(事業再起) 전담 프로그램의 운영</u> 9. ~ 33. (생략)	제14조(소상공인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사업재기</u> ----- ----- ----- 9. ~ 33.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소상공인코로나19회복
지원단장) ①·② (생략)

③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
단장은 제14조제3항제6호, 제6
호의2,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30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보
좌한다.

④ (생략)

제31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
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
급 1명)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
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
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제30조의2(소상공인코로나19회복
지원단장)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제14조제3항제6호의2, 제
8호 -----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한시정원)

<삭 제>

<삭 제>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생략)

⑤ -----

----- 2025년 2월
28일-----

-----.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